

의안번호	2208545
의 퇴 인	한병도 의원
회 답 일	2025. 3. 7.
추 계 번호	25F1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2035년까지 9년간 총 44.6억원(연평균 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은 2026~2030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세수효과는 신고시점을 고려하면 2027~2035년까지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소득세, 2027~2035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21조의22)	-2.2	-4.5	-6.7	-7.8	-8.9	-6.7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4.5	-2.2	-1.1	-44.6	-5.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21조의2제1항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
 -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은 2026~2030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감면효과는 신고시점을 고려하면 2027~2035년까지 발생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2020~2023년 평균 감면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국세통계연보」상 최근 4년(2020~2023년)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되며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여 배분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20년부터 시행
 - 동 감면은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연평균 실적에 '1/4'를 곱하여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연 단위 발생액(100% 감면기준)을 계산하고, 향후 세수효과를 계산
 - 신규 입주기업의 연 단위 감면액(100% 감면) = 8.9억원 × 1/4 = 2.23억원

[표 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배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26년 입주									
2027년 입주									
2028년 입주									
2029년 입주									
2030년 입주									

주: □는 100% 감면, ▨는 50% 감면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 개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해당 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5. 12. 31. → (개정안) 2030. 12. 31.

□ (감면실적) 국세통계연보 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실적은 2020년 9.3억원, 2023년 6.5억원 수준

- 2020~2023년 연평균 감면실적은 8.9억원

[표 3]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실적: 2020~2023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감면실적	9.3	11.3	8.6	6.5	8.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2020~2023년 평균 감면액(8.9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동 감면이 입주 후 5년간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 금액

을 연간 감면액으로 환산하여 시점별 배분

- 신규 입주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8.9억원 × 1/4* = 2.23억원
*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4로 나누어 환산

[표 4]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발생액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26년 입주	2.23	2.23	2.23	1.12	1.12				
2027년 입주		2.23	2.23	2.23	1.12	1.12			
2028년 입주			2.23	2.23	2.23	1.12	1.12		
2029년 입주				2.23	2.23	2.23	1.12	1.12	
2030년 입주					2.23	2.23	2.23	1.12	1.12

주: □는 100% 감면, ▨는 50% 감면

(3) 추계결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2035년까지 9년간 총 44.6억원(연평균 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은 2026~2030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세수효과는 신고시점을 고려하면 2027~2035년까지 발생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소득세, 2027~2035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21조의22)	-2.2	-4.5	-6.7	-7.8	-8.9	-6.7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4.5	-2.2	-1.1	-44.6	-5.0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신미정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미정	02-6788-4837	mjshin@assembly.go.kr